

음 제시되는 검사항목은 안전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사로서 제시된 것이다. 또한 사용자는 대동물 사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제조회사 및 설치회사에게 검사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. 검사항목에 대한 검증방법은 적합기준은 Chapter 5의 15. 대동물 사체처리시스템 검증방법에 따른다.

- (1) 설치 상태 확인
- (2) 압력 시험
- (3) 경보음 시험
- (4) 제균필터 완전성 확인
- (5) 멸균 시험



3.3 주기적 재검증

생물안전 연구시설 설비 및 안전장비는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등의 관리를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재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. 주기적 재검증은 시설 및 장비의 운전상태 확인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며 정상 운전 중 1~2년 동안 1회 수행을 권장하며 이 과정에서 검증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국가 감·교정 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. 주기적인 재검증은 시설에서 사용 중인 감염성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활성 제거가 가능한 소독제로 훈증한 후 및 훈증 결과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 연구시설의 완전한 훈증 소독 이후에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 헤파필터의 교체의 경우에도 생물학적 활성 제거가 가능한 소독제의 훈증 멸균 후 사용했던 헤파필터를 제거하여야 한다. 신규(또는 교체) 설치된 헤파필터에 대해서는 헤파필터의 완전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, 연구 시설의 덕트 누기 시험 및 밀폐구역 내 차압, 풍량, 온습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T.A.B.를 실시하여야 한다.